

## 11\_영업비밀이 성립되는 세 가지 요건

### #1

이번 시간에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명시된 영업비밀의 정의에 따라, 영업비밀을 이루기 위해 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요건은 어떤 과정을 통해 충족할 수 있을까요?

### #2

※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성립요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3

※ 비공지성

영업비밀의 첫 번째 요건인 비공지성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정됩니다. 첫째로, 정보의 내용 중 일부가 공개되었거나 제품의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정보나 영업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비공지성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제3자에게 일부 공지가 되었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비공지성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업비밀은 여전히 비공지성을 유지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4

※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

첫째로, 해당 정보를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러한 정보가 경쟁 관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합니다. 이때 경제적 유용성은 특정한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실패한 사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적 및 인적 자원이 투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5

### ※ 비밀관리성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요건 충족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복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로, 물리적·기술적인 관리, 둘째로, 인적·법적인 관리, 셋째로, 조직적인 관리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복합적으로 만족해야만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충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밀로 관리되는 상황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비밀관리성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

### ※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 생산방법: 생산방법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며, 이는 설비, 설계도, 혼합물의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 그 특성상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방법: 판매방법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고객 데이터, 판매대금 정보, 대리점 관리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보 역시 비공개되어야 하며, 그 중요성 때문에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 제품개발 관련 연구개발 보고서 혹은 데이터나 운영 매뉴얼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원료 공급 및 원가 정보와 같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7

### ※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대상	설명
----	----

시설 및 제품 설계도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라인의 설계도, 공정설계도
물건의 생산·제조 방법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 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물질의 배합 방법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 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 비율, 시차 등으로서 공개되지 않고 역설계로 알아낼 수 없는 것
연구 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연구 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실험 데이터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의 효능, 기계장치의 시운전 데이터 등
시설, 기계설비, 장비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특수 장비와 설비 등

## #8

### ※ 기술상 정보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영업비밀은 공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공지가 되어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절차 도중에 공지되거나 최종 등록된 이후에는 공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게 되면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9

### ※ 경영상의 영업비밀

대상	설명
각종 주요 계획	경영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생산 계획 등
고객명부	지역별 고객 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표 및 대리점·영업점의 제반 영업자료 등
관리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재무관리, 경영분석

	정보 등
매뉴얼 등 중요자료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기술 서류, 그 회사만의 특유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매뉴얼

## #10

### ※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보호대상 차이점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합니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11

### ※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적용 차이

특허권은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특허 출원과정에서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침해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기술 정보나 경영상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공개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12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성립요건으로는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3

### ※ 영업비밀이 지니는 경제적 유용성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하는 비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업비밀로 인해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영업비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경제적 유용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제적 유용성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 중 하나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14

※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인정 범위는?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건인 ‘경제적 유용성’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로, 기술의 개발이나 정보의 취득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투여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해당 정보가 경쟁 관계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특정한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며, 실패한 사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정리하고 입증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

※ 영업비밀이 지니는 비공지성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오직 약정한 ‘우리’끼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6

※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인정 범위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에서 비공지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비밀의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었거나 제품의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해당 기술이나 영업 정보 전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비공지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정보가 국내에서 공지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서 이미 공지된 경우에는 이미 공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사례를 검토할 때는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가능한 외국 사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

※ 기본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알려진 경우 영업비밀 인정 여부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품 제작에 있어 기본  
원리나 법칙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 제품의 기능이나 구성에  
적용되는 방식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제품의  
설계도나 제작 방식 등은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  
본적인 내용이나 원리가 알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현했는지  
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